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2019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CP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 사항의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대리점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CP 활동 참여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사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 관련 점검, 교육, 훈련 등 C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보 및 제보자 보호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법무팀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제보자 보호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과 실질적인 CP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9일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 상 균



대표이사 사장 노 진 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HD현대중공업(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며,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법무팀에서 주관하며, 법무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의 종류와 절차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자율준수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임직원을 포상하거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0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9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3조(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2024. 10. 29.)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목 차

제1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1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I. 개 설	
1. 규제 목적	1
2.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1
3. 규제행위	2
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
5.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3
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체적 판단기준	4
II.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	
1. 최근 공정위 사건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7
2. 법집행의 특징	7
3.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시 사업자에게 불리한 점	7
4. 범위반시 제재	8

제2장 지위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I.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	
1.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	9
2. 본 조항의 특징	10
3. 공정위 심결례	10
II.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11
2. 본 조항의 특징	12
3. 공정위 심결례	12
III.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3
2. 본 조항의 특징	15
3. 공정위 심결례	15

IV.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1.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16
2. 본 조항의 특징	17
V.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1.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18
2. 소비자의 이이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8
3. 본 조항의 특징	18
4. 공정위 심결례	19

제2편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 원칙

I. 개 설	
1. 불공정거래행위란	20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특징	20
II.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심사기준	
1.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21
2. 안전지대의 설정	21
3. 위법성 판단	22
III.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	
1. 최근 공정위 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행	23
2. 법 집행의 특징	23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의 관계	23
4. 범위반시 제재	24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I.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	25
2. 기타의 거래거절	26
3. 공정위 심결례	28

II. 차별적 취급행위	
1. 가격차별	30
2. 거래조건차별	31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2
4. 집단적 차별	34
5. 공정위 심결례	35
III.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1. 부당염매	36
2. 부당고가매입	38
3. 공정위 심결례	39
IV. 부당한 고객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41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2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43
4. 공정위 심결례	44
V 거래강제	
1. 끼워팔기	46
2. 사원판매	47
3. 기타의 거래강제	48
4. 공정위 심결례	49
VI 거래상 지위남용	
1. 구입강제	51
2. 이익제공강요	52
3. 판매목표강제	53
4. 불이익제공	55
5. 경영간섭	57
6. 공정위 심결례	58

VII. 구속조건부 거래	
1. 배타조건부 거래	61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63
3. 공정위 심결례	64
VIII. 사업활동방해	
1. 기술의 부당이용	66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67
3. 거래처 이전 방해	67
4.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68
5. 공정위 심결례	69

제3장 부당한 지원행위 검토

I.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제도	
1.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의 특징	71
2. 부당한 지원행위의 일반적 요건	71
3. 부당성 판단기준	72
4. 범위반시 제재	73
II. 부당한 지원행위	
1. 부당한 자금지원	75
2.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77
3. 부당한 인력지원	80
4.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80
5. 공정위 심결례	81
III.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개관	84
2. 범위반시 제재	85
3.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	85

제1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I. 개 설

1. 규제 목적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장경제시스템에 순응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시장경제시스템을 조정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침해받을 수 있어 경쟁정책상 이를 규제하고 있음¹⁾

2.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

- 위의 추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²⁾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규제는 단순히 시장에서 지배력이 큰 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고,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승리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규제 행위

○ 공정거래법 제5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에 나열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³⁾

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 유형 비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제5조)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④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⑥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⑦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⑧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⑨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⑩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2013년까지 공정위가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 사례는 (주)BC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하나뿐이다.

3) 자세한 내용은 후술

-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행위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 하나의 행위가 양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적용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판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성과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성을 별도로 독자적으로 평가,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나.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중에는 ‘부당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서의 부당성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축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해야 하므로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5조 각 호 ‘부당하게’의 의미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5.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됨

구 분	주 요 사 항	
	의 미	판 단 기 준
거래대상 (상품 및 용역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될 경우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구매행태 ▪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경영의사결정 행태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지역 (지역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 운송비용

구 분	주 요 사 항	
	의 미	판 단 기 준
	<p>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 행태 ▪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경영의사결정 행태 ▪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거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거래분야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단계별로 확정될 수 있음 	-
거래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판매자)의 특성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이나 용역,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구매자군(판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군별로 일정한 거래분야가 확정될 수 있음 	-

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체적 판단기준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가. 시장점유율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음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나.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⁴⁾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한 사업자
2.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사업자
3.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또는 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

○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 ☑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 ☑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 ☑ 입지조건, 원재료조달조건,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 ☑ 제품차별화의 정도,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 ☑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다.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 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⁵⁾
- 당해 시장에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⁶⁾에는 시장지배적 사 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 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⁷⁾

마.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 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⁸⁾

5)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2.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3.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4. 경쟁사업자의 자금력

6)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여기서 '대량구매사업자나 대량공급사업 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 분야에 속하지 않은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는지 여부
3.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 지 여부
5.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
6.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8)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 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 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 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바. 시장봉쇄력

-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의 원재료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⁹⁾이 공정거래법 제6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 규정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음

사. 자금력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¹⁰⁾

아. 기타 고려요인

-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9) 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원재료의 국내 총공급액

10)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계열 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한다.

II.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

1. 최근 공정위 사건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처리 건

2023년도			최근 5년(19~23년)		
전체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比	전체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比
2,503	11	0.4%	13,043	39	0.3%

- 공정위 사건 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최근 5년간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0.3% 정도로 미미함¹¹⁾

2. 법집행의 특징

가. 특정 조항에 집중

- 법 제5조에는 5가지 유형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¹²⁾

나. 낮은 집행비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경우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행위를 직접 처벌하기 보다는 전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¹³⁾
- 따라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대부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있음¹⁴⁾
- 또한 매 사건마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지를 판단해야 함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신고사건이 누적되거나 업계 관행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각종 공정위의 시장분석에 대한 용역보고서 등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음

3.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시 사업자에게 불리한 점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경우 그 행위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요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로 규정되어 있음

11)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12)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3) 이 부분은 앞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서의 '부당성'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14) 기업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사실상 어려워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매우 불리함

4. 범위반시 제재

구 분	주 요 사 항	비고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의 인하¹⁵⁾ ▪ 당해 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¹⁶⁾의 100분의 6의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금액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금액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음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가. 시정조치와 과징금과의 관계

-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과징금 부과 기준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예외적 면제¹⁷⁾

1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특징적인 제재이나, 실제 공정위가 가격인하명령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다.

16)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말한다.

17)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위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I.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법 제5조 1항 1호)

1. 가격의 부당한 결정 · 유지 · 변경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¹⁸⁾

- 가격인상은 경쟁가격을 초과하여 인상하였음을 전제하지만, 시장가격을 찾기는 어려움¹⁹⁾
- 이러한 사유로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진입장벽, 경쟁사업자 등을 고려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

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음²⁰⁾

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의 기준

-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적용함

다. '수급의 변동'의 의미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변동을 말함.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라.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의 의미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18) 법률에서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구체적 행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의 서술은 시행령을 중심으로 한다.
 19) 초과가격에서의 경쟁가격, 부당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세액산정 등에서는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용이하지 않다.
 20)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법률에 '정당한 이유 없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그 사유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마.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의미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이나 인접시장을 포함함²¹⁾

바.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의 의미

-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의 의미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을,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 본 조항의 특징

가. 가격에 관한 규제

- 사업자가 결정하는 가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이 본 조항의 특징임

나. 공정위의 집행

-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심결례는 1992년 제과 3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1999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001년 비씨카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이 있음²²⁾

3. 공정위 심결례

- 2001. 3. 28. 제2001-40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 건 명	BC카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대법원 패소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은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후 자금조달 금리, 대손율 등이 상당기간 낮아졌음에도 더 높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하고 그 결과 보고 	

21) 동종의 거래, 유사시장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한다.

22) 다만, '가격'이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을 조절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역시 집행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동 조항에 대한 집행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II.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법 제5조 1항 2호)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음

나. '최근의 추세'의 의미

-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및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함²³⁾

다.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의 의미

-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²⁴⁾으로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함

라.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의 의미

-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뜻함

23) 여기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은 1.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변경 행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24)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2.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3.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4.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2. 본 조항의 특징

가. 공급량에 대한 규제

- 사업자가 결정하는 공급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함

나. 공정위의 집행

- 1990년대 말 몇 차례 집행²⁵⁾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19년 1건)

3. 공정위 심결례

- 2019. 9. 19. 의결 제2019-239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피내용 BCG 백신 공급 관련 3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하여 피심인 한국백신평매의 경피용 백신 판매를 증대시켜 독점적 이윤을 취득할 의도로 피내용 백신의 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사업자에 과징금 각 990,000,000원 부과 	

- 본 사례 외에 ‘남양유업’ 사건과 ‘제일제당’ 사건이 있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함²⁶⁾

25)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갑작스러운 물량변동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출고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있었다.

26)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물가가 급등하여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패소로 결정되었다. 이 후 공정위는 본 건에 대한 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III.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법 제5조 1항 3호)

1.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원재료²⁷⁾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²⁸⁾
-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양성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술인력
- 당해 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필수적인 요소'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7)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

28) '기능공 포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줄 정도로 다수의 기능공이 스카웃되는 경우를 말한다.

- ☑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 ☑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 ☑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 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뜻함
-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거절·중단·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 필수요소로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 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배타조건,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다만 경쟁의 확대에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아니함
-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해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 서비스 이용고객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²⁹⁾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29)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을 말한다.

2. 본 조항의 특징

가. 법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

- 본 조항의 대부분의 행위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함

나. 공정위의 집행

- 앞선 조항들과는 다르게 실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적용하는 조항

3. 공정위 심결례

- 2010. 8. 31 의결 제2010-10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 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한성항공,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가 항공여객시장에서 운항을 개시하기 전후부터 피심인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게 경쟁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인 국내외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방해하였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10,397,000,000원 부과 	

- 2023. 9. 25 의결 제2023-146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한국방송공사(KBS) 및 문화방송(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종합유선방송사(SO), 위성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375,000,000원 부과 	

IV.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법 제5조 1항 4호)

1.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이외에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가. 유통사업자 및 배타적 거래계약의 의미

- '유통사업자'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을 말함
- '배타적 거래계약'이라 함은 유통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만을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행정관청 또는 사업자단체의 면허권 등 인·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함

다.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³⁰⁾

- '필수적인 요소'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 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

30) 공정위는 앞서 설명한 III.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히 방해하는 행위 중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³¹⁾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³²⁾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2. 본 조항의 특징

가. 간접적 행위도 규제

- 본 조항은 사업자의 직접적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

나. 공정위의 집행

- 최근 공정위가 본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31) 관계기간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을 말한다.

32) 부품, 부자재를 포함한다.

V.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법 제5조 1항 5호)

1.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가.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은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나.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³³⁾

-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 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외에 시행령이나 공정위 고시에서 구체적 유형이나 기준 등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음.

3. 본 조항의 특징

가. 가격남용행위와 유사

- 부당염매는 가격에 관한 내용으로 가격남용행위이지만 본 조항에서 규율하는 반면, 초과가격은 소비자에 대한 착취남용으로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율함³⁴⁾

33) '배타조건부거래'라고도 하는데, 사업활동 방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34)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변경 행위로 규율한다.

나. 공정위의 집행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조항임

4. 공정위 심결례

- 2009. 12. 30 의결 제2009-281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월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철컴(주)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이동통신표준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기술료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부과 ▪ 피심인이 제조하는 모뎀칩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273,197,000,000원 부과 	

- 위 사안에서 기술료(로열티) 차별부과는 기타의 사업방해 행위 중 가격차별 부분이 적용되고,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가 적용됨³⁵⁾

- 2023. 7. 20 의결 제2023-10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구글 엘엘씨 등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정상적인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42,156,000,000원 부과 	

35)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가격설정행위로서 부당염매가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배타조건부 사례로 규제하였다.

제2편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 원칙

I. 개 설

1. 불공정거래행위란?

-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³⁶⁾
-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 분야 또는 특정 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³⁷⁾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특징

- 공정거래법 제45조는 통일화된 유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어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와 많은 유형에서 중복³⁸⁾되며, 공동의 거래거절 등은 공동 행위와 중복됨
- 다른 개별법과 넓은 범위에서 상충³⁹⁾

36) 1. 부당한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부당한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10.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7)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1.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3.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7.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중복되는 경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사안일 경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개별 사업자와의 문제일 경우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9)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타 다른 법규들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II.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심사기준

1.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거래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유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0호⁴⁰⁾는 수권규정으로 시행령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제10호로 규제할 수 없음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와 달리 기본적 행위유형이나 이를 가능할 대강의 기준조차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범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상의 사업활동 중에 행하여지는 어떤 행위가 위 제8호에서 규정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제8호는 행위의 작용 내지 효과 등이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도록 한 수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 제8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위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2. 안전지대의 설정

가. 안전지대의 의미

-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⁴¹⁾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함

나. 안전지대의 효력

- 안전지대는 법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제9호⁴²⁾는 제외)에 한정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등이 작을 경우 시장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을 배제

다. 안전지대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하여 적용하며,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4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에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1)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는 추후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42) 부당지원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 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임
- '공정거래저해성'과 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함
-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⁴³⁾

나.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⁴⁴⁾

-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로 구체화됨

구 분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거래 저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외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음
입증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입증

다. 행위유형별 위법성의 판단

- 행위별로 위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각 행위별로 서술함(후술)

43)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44) 앞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본 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한다.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은 실무상 법위반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III.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

1. 최근 공정위 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리 건

2023년도			최근 5년(19~23년)		
전체 사건	불공정 거래행위	比	전체 사건	불공정 거래행위	比
2,503	137	5.5%	13,043	876	6.7%

○ 공정거래법에 대한 처리사건만으로 한정할 경우 최근 5년간 31.9%를 차지함

2. 법집행의 특징

가. 폭넓은 적용이 가능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거래거절부터 부당지원까지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
- 공정위 소관 타 법률인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이 가능함⁴⁵⁾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 강화

- 2013년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의 관계⁴⁶⁾

가. 학술적 관점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금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특별법적 위치에 있다고 보아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임

나. 판례(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⁴⁷⁾

- 다수의견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절행위와는 별도로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축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평가·해석되어야 한다고 함

45) 예로 하도급법의 적용기간은 거래종료 후 3년 이내 신고된 사건이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 후 7년까지 가능.

46) 앞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으나 본 장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47)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은 거래거절에서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다른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즉,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규제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므로, 별도로 독자적으로 평가·해석되어야 한다고 함

다. 결어

- 결국 판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명확히 구분되나, 회사에서는 시장분석 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범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함

4. 범위반시 제재

구 분	주 요 사 항	비고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 이내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및 시정조치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음 	

가. 시정조치와 과징금과의 관계

-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과징금 부과 기준

-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제2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별 검토

I. 거래거절(법 제45조 1항 1호)

I.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됨

가.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⁴⁸⁾

나. 거래거절의 상대방

- 특정 사업자임⁴⁹⁾
- 회사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본 조항의 대상이 아님

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의 관계

- 사업자간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공동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

구 분	부당한 공동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유사점	▪ '공동의 행위'로서 경쟁질서를 침해함	
차이점	▪ 참가사업자간 경쟁제한이 목적	▪ 제3자에 대한 경쟁방해

라. 위법성의 판단

- 공동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⁵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48)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9) 사업자임을 요하므로 최종 개인 소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50)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마. 정당한 이유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
- 특히,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을 부정

- ☑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공동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안전지대의 설정

- 공동의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 단,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해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합계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함

2.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가. 대상행위

-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나머지 사항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동일함

나. 거래거절의 상대방

- 공동의 거래거절과 동일함

다. 공동의 거래거절과 입증책임의 차이

-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회사가 소명하여야 하나, 기타의 거래거절은 공정위에서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비 고
▪ 정당한 이유 없이	▪ 부당하게	법문상 차이로 입증책임이 달라짐

라. 위법성의 판단

-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경쟁제한성의 판단 여부

-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은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⁵¹⁾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법위반 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 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 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 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 다음의 경우와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마. 안전지대의 설정

○ 공동의 거래거절과 동일함

3. 공정위 심결례

○ 2013. 9. 5. 의결 제2013-152호(공동의 거래거절)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대구동부, 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 동양은 (주)0000 이 발주한 '0000돈사신축공사'의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0000 이 레미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자에게 미납된 레미콘 납품 대금의 대납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는 바,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주)0000 에 대하여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한 사실이 있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이수명령 :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2011. 10. 12. 의결 제2011-177호(기타의 거래거절)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 사업자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 ▪ 피심인은 이 사건 입찰 제안요청서상 위성 부분체 공급자로 명시된 자로서 세트렉아이로부터 해당 위성부분체 공급과 관련된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세트렉아이가 발주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위성 부분체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아니 된다. ▪ 과징금 : 207,000,000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업체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지 말 것
-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 수립 시 컴플라이언스팀과 협의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거래거절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야 범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영향이 미미한 업체에게는 거래를 거절해도 범위반이 아닌지요?
- > 우선 경쟁제한성(시장에서 영향이 미미한지 여부)의 증명은 경제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안별로 경제학적 분석을 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거래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II. 차별적 취급행위(법 제45조 1항 2호)

1.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가. 대상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임
-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
-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나. 가격차별의 상대방

-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임

다. 위법성의 판단

-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⁵²⁾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⁵³⁾
-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52) 가격차별이 일회성이라면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53) 거래선의 전환이 용이하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와 같이 가격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 ☑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한 경우
- ☑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⁵⁴⁾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라. 안전지대의 설정

- 가격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심사면제 대상

마. 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 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 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 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 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2.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함

54) 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

가. 대상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⁵⁵⁾을 차별하는 행위가 대상
-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나. 가격차별의 상대방

- 거래상대방은 사업자⁵⁶⁾

다. 위법성의 판단

-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라. 안전지대의 설정

- 거래조건 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

마. 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 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의 상품, 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

55)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뜻한다.

56) 소비자는 제외되는 것이 가격차별과의 차이점이다.

나. 차별행위의 상대방

- 사업자 및 소비자도 포함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특징

- 앞서 설명한 가격차별, 거래조건 등의 차별과는 달리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대부분은 계열사를 위한 차별에 집중되어 있음⁵⁷⁾

라. 위법성의 판단

-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⁵⁸⁾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

마. 안전지대의 설정

- 유리한 취급을 받은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
- 다만,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바. 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⁵⁹⁾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57)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다른 행위에 비해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이 그 사유로 풀이된다.

58)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59) 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

4.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가. 대상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⁶⁰⁾
-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이 포함

나. 차별행위의 상대방

- 차별취급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
-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는 대상이 되지 않음

다. 위법성의 판단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
-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라. 안전지대의 설정

- 집단적 차별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

마. 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60)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5. 공정위 심결례

○ 2009. 11. 12. 의결 제2009-21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금호터미널(주)의 차별적 취급행위의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일임함으로써 계열회사의 임시차 운행 및 결행을 용이하게 한 반면, 계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시차 운행 및 결행에 관하여 계열회사와 협의하여 운행하도록 함 ▪ 피심인이 임시차 운행 및 결행 관련 배차입력 업무를 자신의 계열회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맡긴 행위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경쟁사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가격과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
- 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거래와 차이를 두지 말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거래거절로만 처벌 받나요?

■ >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우선 거래거절로 검토를 합니다. 거래거절로 검토 후, 거래거절의 사유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시 차별적 취급행위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행위가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된다면 차별적 취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과 부당지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과 부당지원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별도의 비교군(계열회사 外 사업자)이 있으나, 부당지원은 비교군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부당지원에 관하여는 후술하겠습니다.

III.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법 제45조 1항 3호)

1.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가. 대상행위

-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음

계속적 염매	일시적 염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⁶¹⁾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

나. 염매의 상대방

-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다.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의 구별

- 유인염매와 할인특매는 경쟁사업자 배제라는 의도가 없어 부당염매와는 구분됨

유 인 염 매	할 인 특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판촉전략의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의 방법으로 실시기간이 확정 ▪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

라. 위법성의 판단

-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⁶²⁾

61)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관계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2)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 ☑ 당해 시장에서 진입장벽⁶³⁾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를 하는 경우
 - ☑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 파산이나 지급불능상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적 염매의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 ☑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클 수 있음
 - ☑ 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거나 미미하게 됨
- 일시적 염매의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이 인정됨
 - ☑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 ☑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하는 경우
 - ☑ 파산이나 지급불능상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 일시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일시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3)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

마. 안전지대의 설정

- 염매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

바. 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의 신규진입이 단기간 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2.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가. 대상행위

- 통상 거래가격⁶⁴⁾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
-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 매입이 지속적일 필요는 없음

나. 부당고가매입의 상대방

- 사업자에 한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 위법성의 판단

-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64) '통상 거래가격'이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한다.

-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⁶⁵⁾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음
- 고가 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안전지대의 설정

- 고가매입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

마. 범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공정위 심결례

○ 2001. 2. 14. 의결 제2001-31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 건 명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의 부당염매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플러스 안산점이 00.8.30 ~ 00.11.2까지 2개월간 코카콜라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게 구입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 ▪ 이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임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65)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재고품의 소진, 신규시장의 진입 등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원가 이하의 할인판매정책은 불가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회사가 염매를 하여 당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계열회사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된다면 이 역시 부당한 염매인가요?

■ > 회사가 재고소진, 신규시장 개척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염매를 하였는데 반사적으로 계열회사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열위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염매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정당한 목적 없이 계열회사가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염매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염매에 해당됩니다,

■ > 계열회사에 대하여 염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부당한 염매의 경우에는 계열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회사에 대하여 염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염매는 물론,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행위 중 하나로 보일 수도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 > 부당염매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약탈적 가격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부당염매는 그 전제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구별됩니다.

IV.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1항 4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⁶⁶⁾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
-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함⁶⁷⁾

나. 고객 유인의 상대방

- 이익제공(제의)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됨

다. 위법성의 판단

-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⁶⁸⁾하거나 과도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⁶⁹⁾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⁷⁰⁾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이익제공(제의)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부당한 이익제공(제의)을 함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6)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67)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 할 요금, 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68)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69)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70) 이익제공(제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 의뢰, 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부당한 표시, 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71)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72)

나. 기만 또는 위계행위의 상대방

-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다. 위법성의 판단

-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73)
-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74)

71)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72)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며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

73)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74)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⁷⁵⁾
-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음
-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음

나.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상대방

-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

다. 위법성의 판단

-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⁷⁶⁾
 -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5)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76)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 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공정위 심결례

○ 2012. 7. 10. 의결 제2012-105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이동전화기 단말기 판매장려금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2년간 반기별로 판매장려금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 ▪ 과징금 : 14,126,000,000원 	

○ 2024. 1. 5. 의결 제2024-007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의 의사 및 약사에게 피심인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 과징금 : 300,000,000원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회사 제품을 설명하는 카달로그, 광고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의 제품을 폄하하는 내용을 삽입하지 말 것
- 회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 근거 없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
-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회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익제공의 제의를 하지 말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카달로그, 광고에는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과장은 언제나 범위반 인가요?

- > 광고나 제품 소개에 일정부분 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그 과장의 범위가 어떠한 근거 없이 단순히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허위, 과대광고일 경우에는 범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실과 명백히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와 같은 광고는 동 규정 외 표시광고법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경쟁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경쟁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범위반 인가요?

- > 회사 제품의 우수성이나, 가격 경쟁력 등을 통해 회사와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범위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경쟁을 통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리베이트 제공이나 과도한 판촉물(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V. 거래강제(법 제45조 1항 5호)

1.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임
-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을 공급하게 하는 행위

나. 끼워팔기의 상대방

-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다. 위법성의 판단

-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인지 여부⁷⁷⁾
 - ☑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 ☑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⁷⁸⁾
-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
-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 또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로 판단

77)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밀접 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78)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 주된 상품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⁷⁹⁾
- 두 상품을 따로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이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 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2.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⁸⁰⁾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나. 사원판매의 상대방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

다. 위법성의 판단

- 사원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⁸¹⁾
- 임직원에 대한 구입(또는 판매)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⁸²⁾

79) 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와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80)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으며,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⁸³⁾

나. 기타의 거래강제의 상대방

-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81)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 측의 구입, 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 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
 1. 목표량 미달 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역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2.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다만, 목표량 달성 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 및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회사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82) 임직원이 실제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83) 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한다.

다.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와의 차이점

-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의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음

라. 위법성의 판단

-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⁸⁴⁾
- ☑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⁸⁵⁾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4. 공정위 심결례

- 2013. 1. 31. 의결 제2013-029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08. 11.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9. 3.부터 해운대 티볼리 콘도, 대천 파로스 콘도,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경주 콘도, 제주 콘도 등 5개 콘도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식 	

84)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된 거래관계에서 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장려금 축소 등이 있다.

85)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주된 거래관계를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p>권 2매의 요금(1매 당 6,000원)을 객실이용요금에 합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09. 3.부터 2012. 8.까지 기간 동안 객실이용요금에 조식요금을 합산하여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조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식권을 제공하기 이전에 비해 객실이용요금을 개인회원의 경우 14.1%~21.8% 높게, 법인회원의 경우 14.1%~21.1% 높게 받음 	
행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48,000,000원 	

○ 2021. 2. 17. 의결 제2021-00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경인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14년부터 자사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개인별 신문확장 목표를 매년 설정, 할당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은 사원판매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리하였으며,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신문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음 	
행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2023. 5. 31. 의결 제2023-04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신일전자(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 증대, 재고 해소 등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기의 임직원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제품들에 대한 사원판매를 실시하였음 ▪ 그 과정에서 2013년 카페트 매트, 2014년 제습기, 2016년 제습기, 2017년 연수기, 2020년 전동칫솔, 2021년 가습기 제품의 사원판매를 위해 판매 목표할당, 중간현황 비교·점검, 실적의 인사 평가 반영 예고 및 실행, 상품의 강제할당 등 강제적인 방식을 활용하였음 	
행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10,000,000원 	

VI. 거래상 지위남용(법 제45조 1항 6호)

1.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
-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의 것이어도 적용됨

나. 구입강제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도 포함됨

다. 위법성의 판단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지위 여부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존재,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인정되고, 이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의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구입강제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구입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구입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2.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⁸⁶⁾

나. 이익제공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도 포함됨

다. 위법성의 판단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지위 여부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존재,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인정되고, 이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86)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

-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의 거래관계
-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제공강요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 이익제공강요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이익제공강요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 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3.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⁸⁷⁾
-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87)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익제공의 상대방

- 사업자로 한정

다. 위법성의 판단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지위 여부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존재,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인정되고, 이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의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거래 내용의 공정성 판단 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⁸⁸⁾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판매목표강제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판매목표 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판매목표 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88)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판매장려금 문제

-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 단,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범위반에 해당⁸⁹⁾

4. 불이익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⁹⁰⁾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⁹¹⁾

나. 이익제공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도 포함됨

다. 위법성의 판단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지위 여부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존재,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인정되고, 이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89) 컴플라이언스뉴스 제6호 (후술) 참조

90)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91)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

-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의 거래관계
-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거래조건의 설정, 변경 및 불이익제공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 거래조건의 설정, 변경 및 불이익제공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거래조건의 설정, 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거래조건의 설정, 변경 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 계약기간 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행위

마. 불이익 제공에 관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 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미지급하는 행위
-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5. 경영간섭

-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

나. 경영간섭의 상대방

- 사업자만 대상

다. 위법성의 판단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지위 여부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존재,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 인정되고, 이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

-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의 거래관계
-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경영간섭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

- ☑ 경영간섭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경영간섭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 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6. 공정위 심결례

○ 2014. 5. 8. 의결 제2014-105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서울도시가스(주)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96. 1. 10.부터 2005. 6. 29.까지 고객센터로 하여금 가스사용자의 체납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책임수납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하였음 ▪ 고객센터가 100일이 경과하여도 가스사용자의 체납액을 대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 이행한 경우 피심인은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있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2,000,000원 	

○ 2014. 4. 3. 의결 제2014-069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엘지전자(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영업전문점과 1년 단위로 '납품알선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개시함. 피심인은 영업전문점 별로 특정 건설사를 거래처로 지정해 주고, 영업전문점은 자신의 거래처인 건설사에 피심인 제품의 납품을 알선함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은 2008. 6월부터 이 사건 심의 종결일 현재까지 자신의 영업전문점이 납품을 알선한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428건의 납품계약에 대해 자신의 영업전문점들(40개)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 과징금 : 1,865,000,000원 	

○ 2024. 1. 4. 의결 제2024-004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은 8개 예선업체와 2017년 5월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는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그럼에도, 7개 예선업체에게 예선전용사용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 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에도 총 73,51,363원의 예선수수료를 강요하여 수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361,000,000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일방적인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한 조항을 설정하지 말 것
-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당사의 재고품을 받도록 강요하지 말 것(속칭 '물량밀어내기')
- 협력사의 임원선임, 제2수급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하지 말 것
- 협력사와의 거래조건을 당사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수정할 시 컴플라이언스부의 확인을 거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회사에서도 대리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약정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목표강제에 해당되는지요?
- > 순수한 인센티브라면 범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대리점의 영업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범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 없어도 일정부분 마진이 있다면 이는 범위반이 아니나,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대리점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다면 범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 **회사의 대리점 표준계약서의 경우, 일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지 않나요?**

■ > 공정위 가이드라인 또는 심결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대리점에 대한 목표를 일부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영업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리점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에 따른 계약해제(지)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 회사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 계약해제(지)의 근거가 되는 기준 실적이 과도한지 여부와 사실상 계약해제(지)가 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반품을 제한하는 것도 법 위반 인가요?**

■ > 모든 반품의 금지가 법 위반은 아니나, 합리적 사유 없는 반품 금지는 법 위반입니다. 흔히 반품금지의 경우 물량밀어내기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최근 대리점과의 관계에 대하여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서 규제하겠다는 언론보도 들이 많은데 회사도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나요?**

■ > 회사도 언제든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언론, 규제기관에서 문제를 삼는 대리점은 일반 소비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주로 대상이 되며, 특히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대리점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회사도 직접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하도급거래 시 협력사에 대하여 2차 수급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2차 수급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도 범위반 인가요?**

■ > 회사에서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하도급법'상 경영간섭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도로 하도급부문 편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발주처에서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회사에서 2차 수급사업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범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VII. 구속조건부 거래(법 제45조 1항 7호)

1.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⁹²⁾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대상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 불이익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

나. 배타조건부 거래의 상대방

- 사업자만 적용되며 소비자는 제외

다. 위법성의 판단

- 배타조건부 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⁹³⁾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⁹⁴⁾
- 배타조건부 거래 실시기간⁹⁵⁾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⁹⁶⁾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⁹⁷⁾

92)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93)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94) 배타조건부 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95)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96) 배타조건부 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서의 신규진입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다.

97)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 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⁹⁸⁾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라. 안전지대의 설정

-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심사면제 대상

마.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 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8) 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

책임지역제(판매거점제)	개방 지역 제한제	엄격한 지역제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거점을 설정 ▪ 거점외 지역 판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지역 한정 ▪ 복수판매자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지역 한정 ▪ 위반 시 제재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⁹⁹⁾
-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

나. 배타조건의 상대방

- 사업자만 적용되며 소비자는 제외
-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 위법성의 판단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함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¹⁰⁰⁾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¹⁰¹⁾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¹⁰²⁾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¹⁰³⁾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저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99) 예를 들어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을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00) 책임지역제 또는 개방지역제한외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01)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은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 및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102)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103)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안전지대의 설정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
-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심사면제 대상

마.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3. 공정위 심결례

○ 2009. 2. 3. 의결 제2009-050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들은 자영주유소와 주유소 소요제품 전량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고, 동 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향후 3년간 반기별로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보고 	

○ 2009. 6. 5. 의결 제2009-13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이외의 경쟁부품 판매금지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부품공급 가격을 할증하거나 기존의 DC혜택을 폐지하는 등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 ▪ 피심인은 특약서상의 책임공급조항 등을 규정하여 대리점 외 판매금지, 관할 지역 외 판매금지, 도매가 판매준수 등의 거래조건들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 교육이수 ▪ 과징금 : 15,028,000,000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대리점 계약서 변경 시 당사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할 시 컴플라이언스부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할 것
- 대리점의 동의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의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당사의 부품 대리점의 경우 당사의 순정 부품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범위반 인가요?
- >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는 범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당사의 특수한 사정과 정품외 사용 시 하자담보책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에서 문제 삼을 시, 현업부서와 준법경영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도 위법한가요?
- > 해당 부분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기존 법률자문을 통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부서에서는 컴플라이언스팀에 검토를 요청하시어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I. 사업활동방해(법 제45조 1항 8호)

1.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
-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함

나. 기술의 부당이용의 상대방

-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다. 위법성의 판단

- 기술이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¹⁰⁴⁾
 -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¹⁰⁵⁾
-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다른 기술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104)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된다.

105)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가 대상

나. 인력의 부당유인의 상대방

-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다. 위법성의 판단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인력 유인, 채용의 부당성 여부¹⁰⁶⁾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¹⁰⁷⁾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

106)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107) 기술의 부당이용과 같다.

나. 거래처 이전 방해의 상대방

-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다. 위법성의 판단

-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¹⁰⁸⁾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¹⁰⁹⁾

-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됨¹¹⁰⁾
-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나. 사업활동방해의 상대방

-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음

다. 위법성의 판단

-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¹¹¹⁾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¹¹²⁾

108)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109) 기술의 부당이용과 같다.

110)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는다.

111)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112) 기술의 부당이용과 같다.

-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던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 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5. 공정위 심결례

- 2009. 2. 3 의결 제2009-049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SK텔레콤(주)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제조사가 직접 유통시키는 PDA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승인번호의 발급을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PDA폰의 개통을 거절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500,000,000원 	

- 2023. 8. 30 의결 제2023-126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디에스이엔 및 (주)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었음.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및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 ▪ 피심인은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인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 ▪ 또한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등으로 고소, 더불어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하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여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결국 2016년 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되었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 400,000,000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경쟁사의 핵심인력의 상당수를 스카웃하려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사전 질의 후 진행할 것
-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스카웃하지 말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영업활동 시 경쟁사에 비하여 회사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거나, 경쟁사가 회사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요?

■ > 일반적인 제품의 우수성이나 경쟁사의 열위점에 대한 언급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사가 곧 부도에 직면할 수 있어 AS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의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업계 특성상 주요 경쟁사의 인력을 스카웃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범위반의 가능성이 높은지요?

■ > 일반적인 경력직 채용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략적으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스카웃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계 통상 수준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과도한 인센티브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준을 정하여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스카웃 대상자의 직급이나 경력 등 구체적 사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사전 질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부당한 지원행위 검토

I.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제도

1.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의 특징

- 단독행위 규제 중 많은 사례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지원행위임
- 경제적 집중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편제됨
- 시대 상황에 따라 집행의 완급이 조절됨¹¹³⁾

2. 부당한 지원행위의 일반적 요건

가.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 '지원주체'란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
- '지원객체'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¹¹⁴⁾' 또는 다른 회사

나.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

다. 상당성 또는 현저성 기준

- 2013. 8. 13.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현저성 기준을, 현 공정거래법은 상당성¹¹⁵⁾ 기준을 요함. 요건의 판단은 '정상가격'과 '비교하여야 가능하므로, 정상가격의 입증

113)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구제금융을 경험하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우선하여 집행된 경험이 있다.

114) 특수관계인이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 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115)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개정되면서, 공정위에서 법집행이 용이해졌다는 판단하에 법 위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상당성 역시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아직까지 상당성과 관련하여 공정위 또는 법원의 판단 사례가 없어 구체적 사례에서 법 위반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

라. 지원금액 및 지원성 거래규모

-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
-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실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거래의 규모를 의미

마. 지원의도

- 대법원은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 지원의도 이외에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의도, 즉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려는 의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¹¹⁶⁾

3. 부당성 판단기준

가. 기본원칙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개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의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안전지대 적용

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 관련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1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 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사 화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 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 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 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 우
-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 설비를 무 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4. 범위반시 제재

구 분	주 요 사 항	비고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가. 범위반시 제재 대상

-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도 제재(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지원주체만 제재)

나. 과징금 부과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 부과¹¹⁷⁾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¹¹⁸⁾

117)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미부과

118)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 1항 9호)

1. 부당한 자금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금금, 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가. 가지금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금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법 위반 예시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계열 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준 경우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상품, 용역 거래와는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계열 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계열 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한 경우
- 지원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한 경우
- 지원객체 소유 건물, 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 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가지금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

○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금리를 말함

- ①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¹¹⁹⁾
- ③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¹²⁰⁾
-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다. 개별 정상금리를 전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 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당해 자금거래의 실제 적용금리와 일반 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

라.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 정상금리가 일반 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 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마.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려는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

○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

바.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판단

○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19)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 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120)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리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 정상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의 7%미만으로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안전지대로 규정

2.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 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가.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법 위반 예시

-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
-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 ☑ 계열 투신 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 등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 ☑ 금융회사의 특정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경우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이나 친족독립경영회사가 인수한 경우¹²¹⁾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¹²²⁾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에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121) 후순위사채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지원주체가 매입한 후순위사채의 액면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하는 경우
- ☑ 비계열 금융회사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 계열 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 정상가격의 산정

-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함
- ☑ '시가'의 산정은 1. 나. 항의 개별정상금리 산출 기준의 순서와 방법을 준용함¹²³⁾

나.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법 위반 예시

- ☑ 지원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정상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되었을 임대료
-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산식을 이용¹²⁴⁾

$$(\text{부동산 정상가격의 } 50/100)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365 = \text{당해기간의 정상임대료}$$

-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봄

$$\text{당해기간의 임대보증금} \times \text{임대일수}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365 = \text{임대료}$$

다.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122) 유상증자 시 발행된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지원주체의 주식매입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123)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24)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하고 한다.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법 위반 예시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지원객체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함
- '시가'의 산정은 1. 나. 항의 개별정상금리 산출 기준의 순서와 방법을 준용함

라. 상당한 규모의 의한 지원행위

- 상당한 규모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고려사항
 -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마. 자산, 상품 등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판단

- 자산·부동산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인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안전지대로 규정
-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함

3. 부당한 인력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가. 부당한 인력지원의 요건

-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 보다 적은 때

○ 법 위반 예시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나. 정상급여의 산정

-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의 금액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
-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
- 단,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객체와 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음

다.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판단

- 인력 지원행위 또한 자산, 상품 등 지원행위와 동일하게 해당거래의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7% 미만인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안전지대로 규정

4.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법 제45조 1항 9호 나목)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가. 속칭 '통행세 거래'

-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나. 적용 요건

- 지원주체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한 행위
- 지원객체의 역할이 없거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
- 법 위반 예시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 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 시 고려 사항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공정위 심결례

- 2012. 9. 13. 의결 제2012-22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534대의 ATM을 구매하면서 이를 제조사로 선정된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을 거쳐서 구매하였음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롯데알미늄에서는 자신의 마진을 붙여 다시 피심인에게 판매함으로써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인 총4,151백만 원의 이익을 실현함 	
행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649,000,000원 부과 	

○ 2012. 2. 22. 의결 제2012-02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STX조선해양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에스티엑스건설과 2007. 4. 13. 에스티엑스조선125) 사원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사원아파트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공사대금으로 총 56,340백만 원(3.3㎡당 314만 원)을 에스티엑스건설에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대금지급 조건은 공사대금의 25%에 대하여는 선금금 명목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5%에 대하여는 매월 말 2개월 만기 어음으로 공사기성분에 대해 지급함 피심인은 에스티엑스건설에게 같은 기간 중 에스티엑스건설이 수행한 비계열사 아파트 건축공사에 비해 평당 약 1.15배 높은 대가를 지급 또한 지원객체인 에스티엑스건설이 사원아파트 공사 수주를 통하여 시현한 18.47%의 공사이익률은 에스티엑스건설이 비계열회사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를 통해 시현한 공사이익률보다 현저하게 높음 	
행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1,126,000,000원 부과 	

○ 2024. 6. 4. 의결 제2024-229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심인은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04,371,523원을 대신 지급 	
행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 510,000,000원 부과 	

125) 참고로 피심인은 2009. 3. 27. 에스티엑스조선에서 현재의 에스티엑스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계열회사와 거래 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거래조건 등에 차별을 두지 말 것
- 법 위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지원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계열회사가 아닌 특정 회사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행위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공정위의 집행이 대부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또 특정 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공정위의 집행동향이 계열회사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지원행위가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정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는 경쟁력 유무에 따라 시장에서의 진입, 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계열회사가 지원을 받아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독립사업자가 퇴출되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 과거 하나의 기업집단이었던 현대백화점이나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들을 지원하는 행위도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요?
- >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계열회사가 아닌 사업자를 지원하는 행위도 범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 질의와 관련하여 회사가 현대백화점과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여 거래한다면 차별적 취급행위로 규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III.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법 제47조)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개관

가. 연혁

- 2013. 8. 13. 법률 제12095호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핵심적인 개정 부분임
- 2018년 하반기 공정위의 전면개편안에서 적용범위에 이른바 '사각지대'(간접지분 포함)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20. 2.까지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임

나. 적용 요건

-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와 행하는 특정 거래를 규제
- 제공주체
공시대상 기업집단¹²⁶⁾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함(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 기준)
- 제공객체
 - 특수관계인¹²⁷⁾(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 단, 기업집단분리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및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가 대상임(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 기준)
 -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이익제공행위

-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공
-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26)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집단은 제외한다.

127) 본래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동일인, 친족,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원, 비영리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나, 동 조항에서는 동일인 및 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에 한정한다.

2. 범위반시 제재

구 분	주 요 사 항	비고
시정조치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계약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	▪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원 이내	
형사처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가. 범위반시 제재 대상

-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도 제재(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만 처벌)

나. 과징금 부과 기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¹²⁸⁾

3.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판단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말함
- 제공주체가 직접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공객체가 제3자를 매개하여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도 해당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 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128)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자금 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한 경우
-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제공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경우
-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한 경우
- ☑ 보유하고 있는 제공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태만히 한 경우
- ☑ 제공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제공한 경우

○ 자산·상품·용역 거래

-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제공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제공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회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 제공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제공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않음)(주식 고가매입)
-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우회인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공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제공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전환사채의 저가주식 전환)
-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익귀속객체 등에 매각한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제공객체가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회사채 고가매입)
-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제공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제공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제공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 제공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 제공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 제공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 ☑ 주택관리업무를 제공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제공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제공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 ☑ 제공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제공객체에게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이나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제공객체의 역할을 제공주체가 수행하거나 제공주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등 제공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통행세 거래)

○ 인력거래

-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공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한 경우
- ☑ 제공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

○ 적용제외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나.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공

-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판단기준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함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
-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는 1)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2) 회사가 사업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됨

-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
-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을 제공객체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인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 적용제외

1)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다.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판단기준

- 자금에 해당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가증권 등 자산에 해당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적용제외

- 정산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라.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판단기준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 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봄
-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봄. 단,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봄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인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적용제외

-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 ☑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200억 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 해당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전체 상품·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

-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효율성)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효율성)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효율성)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효율성)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효율성)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보안성)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보안성)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요인으로 인한 긴급상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함(긴급성)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동일인 또는 동일인 친족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반드시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에 검토를 요청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범위반인가요?
- > 계열회사와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받으며 하는 거래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만 규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 > 수의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사유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정상적인 거래는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고려나 비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교 검토 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게 된 경우,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 새로 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서는, 효율성 증대 효과에 따른 적용제외(즉,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규제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계열회사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분사/신설 후 상당기간은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관련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특히, 분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합리적 고려나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긴급하게 업무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계열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긴급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 > 납품기일은 회사 외적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2019년 6월	초판 발행
2020년 3월	제2판(불공정거래행위 부문 · 일부개정) 발행
2023년 3월	제3판(불공정거래행위 부문 · 전면개정) 발행
2024년 9월	제4판(불공정거래행위 부문 · 일부개정) 발행

편 찬 부 서 HD현대중공업 법무팀
담 당 김해성 수석변호사 (052-202-3043 / julis87@hd.com)
박은희 책임 (052-202-3047 / mokmom@hd.com)
현지혜 사원 (052-202-3048 / hyunjh2265@hd.com)

이 책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Copyright (c) 2024 HD Hyundai All Rights Reserved.